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46

발의연월일: 2025. 1. 15.

발 의 자:이수진・김성환・장철민

김현정 • 민병덕 • 최기상

김태년 • 서미화 • 허 영

송옥주 · 신장식 · 김남근

이용우 · 전진숙 · 김 윤

한창민 • 백승아 • 김문수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

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

법률 제 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조합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로, "사용자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 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노종조합 또는 사용자단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 단체인 노동단체 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6조제 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③ -----전국적 규모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 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 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 에 따라 위촉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 ----, 전국적 규모의 총 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 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 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 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 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위촉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 ⑤ -----전국적 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	<u>체</u>
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	
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